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601호

「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854호, 2017.5.30.)  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
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보존, 관리 등을 박물관장이  
결정·관리하도록 현행화하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유물·자료 등 보존 업무 주체 현행화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 
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)

-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라 자료 관리 등 업무를 관장이 결정·관리하  
도록 합치(국토교통부장관→국립항공박물관장)

나. 용어 변경(유물→자료) (훈령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 
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,  
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 서식)

다. 존속기한 설정(안 제16조)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항공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36호  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
- 전화 : 044-201-4059, 4180 / 팩스 : 044-201-5263